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12. 13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11월 13일

나. 발 의 자 : 정선희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
제5차 행정위원회(2017. 12. 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정선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사회·경제적 환경 영향으로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주민 들이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자해득교육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비문해 주민들의 기초 일상생활 능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 허용 근거를 규정함
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- 이 제정 조례안은 사회·경제적 환경 영향으로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구민이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문자해득 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, 비문해 구민의 기초 일상생활 능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- 주요내용으로,
 -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3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을 영등포구 거주 비문해·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으로 명시하였으며,
 - 안 제4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5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임무를 명시하였으며,
 - 안 제6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공동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음.

- 검토결과, 본 제정 조례안은 교육의 기회가 없어 가정과 사회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과 성인비문해자,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교육지원 서비스제공으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정선희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320 |
|----------|-----|

발의년월일: 2017년 11월 일

발 의 자: 정선희 의원 외 4명

1. 제안이유

사회·경제적 환경 영향으로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주민들이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자해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비문해 주민들의 기초 일상생활 능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을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(안 제4조)

라.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

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 허용 근거를 규정함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교육기본법」, 「평생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, 제4조, 제8조, 제10조 및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,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성인문해교육”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, 가정·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
2. “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”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대상)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, 빈곤, 장애,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비문해·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, 성별, 직업 등을 불문한다.

제4조(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) ① 성인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,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.

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.

제5조(구청장의 임무)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1.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
2. 성인문해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
3.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
4.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

제6조(공동추진)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7조(경비지원)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평생교육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
2.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, 홍보, 학술회의, 학습동아리 활동 등의 사업
3.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, 문화행사 등의 사업
4.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

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를 따른다.

④ 제2항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,

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(공공시설의 이용)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 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.

제9조(표창 등)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·단체 및 개인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